

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2. 15(수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2. 21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2. 24(목)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 2. 24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일래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의 반영을 위한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지정 및 종토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관련법률 명칭개정으로 인한 문구 수정(안 제2조)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(안 제2조, 3조)
 -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
 - ▷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
- 종토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(안 제32조의 2)
 -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
 - ▷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 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이 정비되었으며,
 -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던 것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으며,
 - 종토세의 경우 그 동안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을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율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